

비전임 연구교수 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비전임 연구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연구교수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및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본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취·창업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와 부설 연구소 등의 업무와 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

- ① 연구교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경우 우선 우대하여 임용한다.

제4조(임용절차)

연구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필용한 경우 관련 학과장, 센터장, 연구소장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임용기간)

-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계약 임용하고, 재계약시는 2년 이상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.
-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6조(임무)

- ① 연구교수는 소속된 센터 및 연구소에 부합된 연구 및 활동을 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명한 특별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② 해당 연구교수의 전공분야 과목이 개설되어 학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장이 허락할 경우 최대 6시간 이내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)

- ① 연구교수의 급여는 본교의 급여 책정기준에 따라 임용 계약에 의거 정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강의를 수행할 경우 본교 강의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전임교원 시행내규, 교육관계법령, 본교 관련 제 규정, 임용계약의 조건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